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54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한민수·허 영·박지원

송옥주・박상혁・황 희

임오경 · 박희승 · 이병진

이연희 · 한준호 · 정일영

김영호 · 김 현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 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법률 제 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보호위원회가 고시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71조제5호 중 "제24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으로, "고유식별정보를"을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로 한다. 제75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	제한) ①		
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			
호를 처리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	3		
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	<u>대통령령으로</u>		
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			
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4조제1항</u> (제26조제8항에	5. <u>제24조제1항ㆍ제24조의2제1</u>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u> </u>		
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u>를</u> 처리한 자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		
	<u>등록번호를</u>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생 략)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6. (생략)
-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
 번호를 처리한 자
- 8. ~ 27. (생략)
- ③ ~ ⑤ (생 략)

2
1. ~ 6. (현행과 같음)
<삭 제>

- 8. ~ 27. (현행과 같음)
- ③ ~ ⑤ (현행과 같음)